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0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재경, 우창윤, 주찬식, 박성숙,
강구덕, 이숙자, 김제리, 성중기,
진두생, 박중화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주거기본법」 제정 및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 개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“주택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3호 중 “주택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주택정책심의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56조제2항제3호 중 “주택정책심의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“주택정책심의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5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조정대상구역”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주택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56조(시기조정사유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제58조(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55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주거정책심의위원회</u>(---- “<u>주거정책심의회</u>”-----)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시기조정사유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 <u>주거정책심의회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58조(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 <u>주거정책심의회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남 창 진